

# 중어중문학부 교환학생프로그램 학점인정 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의 목적은 <중어중문학부 졸업요건규정>에 따른 중어중문학부 소속 학생 및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들에 대해 학부 차원의 학점인정을 따로 정하는 데 있다.

제 2 조 (용어의 정의) “교환학생 프로그램”은 본교 개설수업 외에 본교와 협정을 맺은 중국 파견대학에서 수업을 이수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해주기로 규정한 프로그램을 말한다.

## 제 2 장 국외 교류학점 인정 내규

제 3 조 (국외 교류의 전공학점 인정기준)

- ① 파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.
- ②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파견대학에서 수강할 수 없다.
- ③ 파견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본교에서 재수강할 수 없다.
- ④ 파견 후, 첫 번째 학기와 두 번째 학기에 동일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, 둘 중 하나만을 인정한다.
- ⑤ 학점 인정을 위해 중어중문학부 학부장과 면담 시 파견대학의 강의계획서, 성적표 및 본교 학점이수표를 필수 지참하도록 한다. 이에 준하여 학점인정 절차를 진행한다.

⑥ 본 학부에서는 전공 학점 인정범위를 아래와 같이 제한한다.

전공과목은 한 학기당 최대 6 학점, 1년에 최대 12 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

#### 제 4 조 (국외 교류의 전공필수학점 인정기준)

- ① 전공필수로 인정이 가능한 과목은 파견 당시 전공필수로 구분되어 있는 과목에 한한다.
- ② 전공필수 교과목을 인정할 때에 본교의 교과목과 일대일 매칭을 한다. 단, 매칭 교과목이 3 학점 미만일 경우, 유사교과목을 추가 매칭하여 3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③ 학칙 제 47 조 2 항(참조 확인)에 근거하여 전공필수 교과목의 인정은 파견 기간에 관계없이 전체 교환학점 중 한 과목(3 학점)으로 제한한다.

#### 제 5 조 (국외교류 인정학점 계산기준) 파견대학과 본교의 전공 학점 기준이 상이한 경우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.

- ① 전공 교과목 인정 학점 수는 과목당 3 학점으로 제한한다.
- ② 파견대학에서 취득한 전공 교과목의 학점이 3 학점 미만일 경우, 유사교과목을 추가하여 각각의 교과목을 입력하되, 학점 수의 합이 3 학점이 되도록 하며, 잔여 1 학점은 일반교양으로 인정한다
- ③ 파견대학에서 취득한 전공 교과목의 학점이 3 학점을 초과할 경우, 3 학점으로 인정하며, 잔여학점은 일반교양으로 인정한다.

참조

숙명여자대학교 학칙 제 47 조(타 대학교 등에서의 수학기간 및 취득학점)

- ② 본교와 학술교류 협정을 맺은 국내외 교육기관에 파견된 교환학생이 취득한 학점은 본교 교과목 구분별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되, 본교에서 이수한 학점이 교과목 구분별 졸업학점의 1/2 이상이어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.

#### 부칙

- (1) 본 내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\* 2021학년도 9월 파견자부터 적용)
- (2) 본 내규는 파견 전, 중국 대학으로 파견되는 모든 학생에게 배부되므로 파견 이후에는 본 내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.
- (3) 학점인정에 관련한 본교의 학칙 및 시행세칙, 중어중문학부의 내규 인지부족으로 인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으며, 학부장의 승인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 내용은 번복이 불가하다.
- (4) 교환학생프로그램 파견자는 학사지원팀으로 학점인정신청서를 최종 제출하기 이전에, 학부 사무실에 학점인정 서류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.